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력시장 거래상품의 명시 및 전기사업 변경허가 대상 확대·별칙 신설〉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480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한정애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6. 6. 25.
3. 회부연월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시장은 하루전 현물시장 중심의 체계에서 실시간 시장, 예비력 시장, 용량시장 등으로 시장 구조가 다변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전력시장은 전력만을 거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거래 상품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함.

또한 사업자가 전력계통 연계장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무분별하게 연장하는 등 인허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이를 적절히 규제하고 관리할 법적 수단이 미비한 실정이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취득하더라도 사업 허가 취소 수준의 행정처분에 그칠 뿐 실효성 있는 벌칙 규정은 부재함.

이에 현행법상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공급가능용량, 예비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을 포함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설비용량, 전력계통의 연계장소 등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도 허

가를 받도록 하며, 거짓으로 인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7조 및 제101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전력시장의 정의에 거래 대상 상품을 명시하고(안 제2조 제13호),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항 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직접 열거하며(안 제7조제1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01조제1호의2 신설)¹⁾.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12의15. (생략)	1. ~ 12의15. (현행과 같음)
13. “전력시장”이란 전력거래를 위하여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13. ----- <u>전력, 공급가능용량, 예비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u> <u>의 거래를</u> ----- ----- -----.

1) 「전기사업법」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을 한 자
2. ~ 4. (생략)
5. 제31조제1항·제2항 또는 제32조를 위반하여 전력시장 외에서 전력거래를 한 자
6. 삭제 7. (생략)

현행	개정안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	제101조(벌칙)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신설>	<u>1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u>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 개정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안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비용량을 변경하거나 전력계통 연계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함²⁾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력시장을 “전력거래를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제2조제13호),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함(제31조제1항).³⁾

전력거래의 방법과 정산·결제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력거래소가 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위임

2) 2026년 8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20266)은 제7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면서 현행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이동시키고, 제101조제1호 중 “제7조제1항을”을 “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의4제1항을”로 개정하고 있음. 위 조문대비표는 개정안이 제출될 당시의 현행 법률을 기준으로 한 것임.

3)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⑦ (생략)

되어 있음(제43조).⁴⁾

이와 관련하여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전력거래”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개정안이 새로 규정하려는 “공급가능용량”과 “예비력”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지 않음.

두 용어는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정의되어 있는바⁵⁾, 개정안은 현재 전력시장운영규칙에만 규정되어 있는 거래 상품의 명칭을 법률로 옮겨 규정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전력시장의 운영 방식도 변화하고 있는데, 전력시장운영규칙은 2023년 8월 제16장을 신설하여 실시간시장, 예비력시장 및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제주지역 시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⁶⁾

4) 「전기사업법」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전력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2. 전력거래의 정산·결제에 관한 사항 3. 전력거래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 전력계통의 운영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5. ~ 7. (생략)

5)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공급가능용량”이라 함은 중앙급전발전기 및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입찰을 통해 거래시간별로 공급 가능한 용량(MWh)을 말한다. ...

57. “예비력”이란 전력수급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력공급 또는 전력수요를 증감할수 있는 여유용량을 말하며, 상향예비력과 하향예비력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상향예비력은 공급예비력과 운영예비력으로 구분한다.

※ 「전력시장운영규칙」은 「전기사업법」 제43조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규칙임.

6)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6.1.4조(대상사업) 시범사업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시간시장 2. 예비력시장 3.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4. 기타 전력시장 개선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

※ 제16장(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 운영규칙)은 2023. 8. 30. 신설되었으며, 제16.1.2조제1항은 같은 장을 제주지역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즉 제안이유가 들고 있는 실시간 시장과 예비력 시장은 현재 제주 지역 시범사업의 단계에 있음.⁷⁾

한편 전기사업의 허가에 관하여 현행 제7조제1항 후단은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 중요 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음.⁸⁾

제안이유는 사업자가 전력계통 연계장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사업을 무분별하게 연장하는 등 인허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개정의 배경으로 들고 있음.

이 가운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태를 살펴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허가된 발전사업 189건 중 공사 계획인가를 취득한 것은 36건임.

7) 본 검토보고에서 인용한 전력시장운영규칙은 한국전력거래소가 2024. 2. 13. 공고한 규칙임.

8)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변경허가사항 등) ①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2. 공급전압
3.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발전용 전기설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가. 설치장소. 다만, 동일한 읍·면·동에서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설비용량(변경 정도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원동력의 종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이 3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전기설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용 전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별표 5 제1호나목에 따른 발전설비[별표 5 제1호나목에 따른 원동력설비 중 터빈(높은 압력의 액체·기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회전하는 힘을 얻는 기계를 말한다) 및 보일러와 같은 목에 따른 발전기계통설비 중 발전기를 모두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마. 별표 1 제1호사목에 따른 전력계통의 연계 계획 중 연계장소의 변경. 다만,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의 사유로 연계장소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생략)

[최근 5년간 허가된 발전사업의 공사계획인가 취득 현황]

(단위: 건, 공사계획인가 건수 / 발전사업 허가 건수)

구 분	수도권	호남	영남	충청	강원	제주	계
육상풍력	-	0 / 2	3 / 25	0 / 2	0 / 11	-	3 / 40
해상풍력	0 / 7	2 / 40	0 / 11	0 / 3	-	-	2 / 61
연료전지	3 / 11	0 / 9	5 / 18	0 / 2	1 / 2	-	9 / 42
LNG	0 / 4	-	3 / 5	2 / 2	-	0 / 2	5 / 13
집단에너지	2 / 5	0 / 3	-	1 / 2	-	-	3 / 10
양수	1 / 1	-	0 / 1	1 / 1	1 / 1	-	3 / 4
BESS	-	6 / 13	-	-	-	5 / 5	11 / 18
SRF 등	-	0 / 1	-	-	-	-	0 / 1
계	6 / 28	8 / 68	11 / 60	4 / 12	2 / 14	5 / 7	36 / 189

주) 제주 풍력(허가권 이양), 태양광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DB 부재)은 제외한 수치임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

다만 위 자료는 최근 5년간 허가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준비기간이 남아 있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허가 건수와 공사계획인가 건수의 차이를 그대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의 수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한편 개정안이 새로 변경허가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음.

같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비용량을 100분의 10 이하로 변경하거나 전력계통 연계장소를 변경하여 승인받은 건수는 발전사업 허가증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처리되어 통계가 관리되고 있지 않음.

이는 두 사항이 현행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의 대상

에서 제외되어 있어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이며, 그 결과 개정안에 따라 새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2024년 7월 새만금 풍력 발전사업 1건임.

현재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그 근거가 법률이 아닌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두어져 있고, 인허가 관리의 기준이 되는 변경허가 대상도 부령에만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여건에 비추어 보면, 거래 대상 상품과 변경허가 대상을 법률에 명시하고 인허가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전력시장의 정의 변경이 “전력거래”라는 문언을 사용하는 다른 조문에 미치는 영향, 개정 전 이루어진 거래 및 정산의 근거, 변경허가 대상의 적용 범위와 현행 시행규칙 규정과의 관계, 2026년 8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신고제도와 적용 관계, 벌칙 신설에 따른 제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

첫째, 전력시장의 정의를 변경하는 데 따라 “전력거래” 문언을 사용하는 다른 조문과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안 제2조제13호는 전력시장을 “전력, 공급가능용량, 예비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력거래”라는 문언을 제9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41조, 제43조, 제101조 등 다수의 조문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들 문언을 함께 개정하고 있지 않음.

특히 제33조제1항은 전력거래가격을 “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력의 거래가격”으로 정의하고, 이를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으로 하고 있음.⁹⁾

즉 개정안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범위가 넓어지더라도, 그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지칭하는 문언과 가격·정산에 관한 규정은 전력을 기준으로 유지되게 됨.

이 경우 전력 외의 상품에 대하여 그 거래가격을 어떻게 결정하고 정산할 것인지에 관한 근거를 제33조에서 찾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

9) 「전기사업법」 제33조(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① 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력의 거래가격(이하 “전력거래가격”이라 한다)은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전력거래의 정산은 전력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방법은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

아울러 안 제2조제13호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을 두어 상품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현행법은 제31조제1항¹⁰⁾에서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제101조제5호¹¹⁾에서 이를 위반하여 전력시장 외에서 전력거래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거래 상품이 추가되는 경우 위 의무와 벌칙의 적용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법 적용 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력거래” 문언을 사용하는 조문 및 제33조의 가격·정산 규정을 함께 정비하는 방안과 위임되는 상품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법률에 두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 전에 이루어진 거래 및 정산의 근거에 관한 정리가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 「전기사업법」상 전력거래가 전력만의

10)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 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⑦ (생략)

11) 「전기사업법」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을 한 자
2. ~ 4. (생략)
5. 제31조제1항·제2항 또는 제32조를 위반하여 전력시장 외에서 전력거래를 한 자
6. 삭제 7. (생략)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가능용량·예비력 등 상품의 거래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전력시장을 통하여 용량정산금과 보조서비스정산금 등을 정산하고 있는 점 및 선도계약시장과 실시간·예비력 시장을 도입한 점을 고려할 때, 거래 상품을 법률에 열거하면 기존의 정산체계와 시장의 법적 근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고, 전력거래를 전력 그 자체만의 거래로 좁게 해석할 경우 필요한 상품의 신속한 도입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이 “전력거래”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거래 대상이 전력에 한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다만 제33조제1항이 전력거래가격을 “전력의 거래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이 전력을 거래의 기본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바, 현행법의 해석만으로 이 문제가 분명하게 정리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거래 상품을 법률에 열거하는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개정 전에는 그 근거가 없었다는 해석이 제기되어 종전에 이루어진 거래 및 정산의 효력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음.

따라서 거래 상품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개정안의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이 법 시행 전에 전력시장운영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 및 정산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둘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새로운 상품의 거래방법과 정산에 관한 사항은 개정 이후에도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 규정되게 되므로, 제안이유가 밝히고 있는 “새로운 거래 상품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어느 범위까지 마련되는지에 관하여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안 제7조제1항 각 호의 적용 범위를 현행 시행규칙 규정과 대조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안 제7조제1항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공급전압, 설비용량의 변경, 전력계통 연계장소의 변경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 시행규칙 제5조제1항과 대조하면 다음과 같음.¹²⁾

1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변경허가사항 등) ①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2. 공급전압
3.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발전용 전기설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가. 설치장소. 다만, 동일한 읍·면·동에서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설비용량(변경 정도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원동력의 종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이 3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전기설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용 전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별표 5 제1호나목에 따른 발전설비[별표 5 제1호나목에 따른 원동력설비 중 터빈(높은 압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과 안 제7조제1항 각 호 대조]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안 제7조제1항
1.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1.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2. 공급전압	2. 공급전압
3.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발전용 전기설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해당 문구 없음)
가. 설치장소(동일한 읍·면·동에서 변경하는 경우 등은 제외)	(규정하지 않음)
나. 설비용량(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는 제외)	3. 설비용량의 변경(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도 포함)
다. 원동력의 종류(설비용량 3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전기설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규정하지 않음)
라. 발전설비(터빈·보일러 및 발전기를 모두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규정하지 않음)
마. 별표 1 제1호사목에 따른 전력계통의 연계 계획 중 연계장소의 변경(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의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4. 전력계통 연계장소의 변경(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의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
(해당 규정 없음)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먼저, 현행 시행규칙은 설비용량과 연계장소의 변경을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발전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안 제3호와 제4호에는 이러한 한정이 없음.

연계장소의 경우 시행규칙이 인용하고 있는 별표 1 제1호사목도 전력계통의 연계 계획을 발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만 해당하는

력의 액체·기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회전하는 힘을 얻는 기계를 말한다] 및 보일러와 같은 목에 따른 발전기계통설비 중 발전기를 모두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별표 1 제1호사목에 따른 전력계통의 연계 계획 중 연계장소의 변경. 다만,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의 사유로 연계장소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생략)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 제도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적용 대상이 한정되어 있음.¹³⁾

그 결과 안 제3호와 제4호는 문언상 송전사업이나 배전사업 등 발전사업 외의 전기사업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읽힐 여지가 있어, 그 적용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다음으로, 현행 시행규칙 제3호 가목의 설치장소, 다목의 원동력의 종류, 라목의 발전설비는 안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들 사항을 변경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인지, 안 제5호의 위임에 따라 계속 부령에 규정하려는 것인지가 문언상 분명하지 않으며, 후자라면 성질이 같은 변경허가 대상이 법률과 부령에 나뉘어 규정되게 됨.

끝으로, “연계장소”는 현행 법령에서 별표 1 제1호사목의 “전력계통의 연계 계획” 중 일부를 지칭하는 방식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그 범위를 정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를 법률 본칙에 직접 규정하는 경우 변경허가 대상이 되는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법 적용 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할

1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사업계획서 작성방법(제4조제1항제1호 관련)

1.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 바. (생략)

사. 전력계통의 연계 계획(발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아. ~ 카. (생략)

수 있도록, 안 제3호·제4호의 적용 대상을 발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으로 한정할 것인지, 현행 시행규칙 제3호 가목·다목·라목의 사항을 법률에 함께 규정할 것인지, 연계장소의 범위를 하위 법령에 위임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넷째, 안 제3호·제4호에 따라 확대되는 규제의 범위 및 신고제도와 적용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안 제3호와 제4호는 현행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마목이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두 가지 사항, 즉 설비용량을 100분의 10 이하로 변경하는 경우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의 사유로 연계장소가 변경되는 경우를 각각 변경허가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안 제3호와 제4호는 현행 부령의 내용을 법률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변경허가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안 제1호·제2호·제5호는 수용하되, 설비용량을 100분의 10 이하로 변경하는 경우까지 변경허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므로 신고제도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의 사유로 연계장소가 변경되는 경우는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고려하여 변경허가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국전력공사 계통기획처는 발전사업자의 임의적인 연계장소 변경을 관리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한국전력공사의 설비 보강계획

변경이나 공동접속 유도 등에 따른 연계장소 변경은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이 아니라 효율적인 계통연계를 위한 조정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에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은 허가권자가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지를 심사할 때 전력계통의 연계 계획에 관하여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연계 계획에 관하여는 허가 심사 단계에서 계통운영 주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¹⁴⁾

이러한 점에서 계통운영 주체의 사유로 연계장소가 변경되는 경우를 다시 변경허가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기존 절차와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한편 앞서 살펴본 기후에너지환경부 의견에서 언급된 신고제도는 다음과 같이 이미 입법이 이루어졌음.

2026년 8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20266)은 제7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허가를 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¹⁵⁾

1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허가의 심사기준) ① ~ ④ (생략)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 제7조제5항제4호의2에 따른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사목에 따른 전력계통의 연계 계획에 관하여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및 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생략)

위 대안의 제7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을 두고 있어,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 대상으로 규정된 사항이라도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임.¹⁶⁾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설비용량을 100분의 10 이하로 변경하는 경우를 신고제도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과 위 대안이 모두 시행되는 경우 같은 사항이 법률에서는 변경허가 대상으로 열거되고 부령에서는 신고 대상으로 규정될 수 있음.

이 경우 사업자가 변경허가와 신고 중 어느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게 되므로 두 조항의 적용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위 대안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12조제1항의 허가 취소 또는 사업정지 사유로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¹⁷⁾, 현행 제12조제1항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를 취소 또는 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20266)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위 대안은 현행 제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2026년 8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부칙 제1조에 따라 위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임.

16) 위 대안 제7조의 개정규정과 개정안의 시행일은 모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임. 위 대안 부칙 제1조는 제10조의제1항 등 일부 개정규정에 대하여 다른 시행일을 정하고 있으나,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20266)은 제12조제1항에 “4의2.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신설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4호의2”를 “4호의3”으로 하고 종전의 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이동시키고 있음. 신설되는 제4호의2는 위 단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의 임의적 사유에 해당함.

변경허가 대상을 넓히는 경우 그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인허가 관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안 제3호·제4호의 괄호 부분을 유지할 것인지, 유지하는 경우 위 대안 제7조제2항의 신고 대상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유에 따른 변경을 신고 등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비용량을 100분의 10 이하로 변경하거나 전력계통 연계장소를 변경한 사안은 발전사업 허가증 기재 사항의 변경으로 처리되어 그 건수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섯째, 안 제7조제1항 후단 및 각 호의 문언과 부칙의 적용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제7조제1항 후단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변경하고 있음.

이에 따라 후단은 “허가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가 됨.¹⁸⁾

18) 개정 전후의 문언은 다음과 같음.

〈현행〉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 허가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와 관련하여 안 제3호는 “설비용량의 변경”을, 제4호는 “전력계통 연계장소의 변경”을 각각 규정하고 있어, 후단과 함께 읽으면 “설비용량의 변경을 변경하려는 경우”, “전력계통 연계장소의 변경을 변경하려는 경우”와 같이 변경이라는 표현이 두 차례 나타나게 됨.

안 제5호도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후단의 “중요 사항”과 중첩됨.

아울러 안 제1호와 제2호는 변경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형식인 반면, 제3호와 제4호는 변경이라는 행위를 규정하는 형식이어서 각 호의 표현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후단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하고 각 호를 변경의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 통일하는 방안, 또는 각 호를 변경 행위를 규정하는 형식으로 통일하고 후단의 “중요 사항”이라는 표현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안 부칙 제2조는 안 제7조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설비용량을 변경하거나 전력계통 연계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안 제1호(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제2호(공급전압) 및 제5호에 관한 적용례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개정규정의 적용 범위가 분명해질 수 있도록 적용례의 문언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37